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2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구자근 · 이상희 · 박성민
최수진 · 김선교 · 박준태
정점식 · 김성원 · 강명구
김도읍 · 김위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조·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인공지능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대상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촉

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인공지능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경영관리, 생산, 유통,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인공지능전환의 지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수요 발굴 및 진단
2. 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인공지능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공지능전환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전환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수요 발굴 및 진단

2. 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3. 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인공지능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사업)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제74조(사업) ① -----

있다.

1. · 2. (생략)

<신설>

3. ~ 23. (생략)

② · ③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인공지능전환의 지원

3. ~ 2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